

사무직원 채용 재공고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노원구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.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는 사무직원 채용공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□ 변경 내용

변경전	변경후
2. 응시자격 <input type="checkbox"/> 필수사항 1) 컴퓨터활용 및 문서작성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관련 자격증 소지자. <input type="checkbox"/> 우대사항 1) 20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. 2) 공공기관 1년 이상 근무자.	2. 응시자격 <input type="checkbox"/> 필수사항 1) 컴퓨터활용 및 문서작성 가능자. <input type="checkbox"/> 우대사항 1) 10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. 2) 공공기관 6개월 이상 근무자.

2022 년 2 월 6 일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



1. 채용 분야 및 인원

직 급	근무장소	분야	인원	담당업무	근무시간
사업관리팀 사원	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 1층 (상계동, KB금융 노원플라자)	사업 지원	1명	- 신규 사업 발굴 및 계획 - 사업계약 및 검토 - 사업장 관리 및 운영지원	· 9:00-18:00 · 월~금요일 근무

※ 3개월 수습 기간 만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

2. 응시자격

- 지역·성별 구분 없이 20세 이상이 된 자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필수사항
 - 1) 컴퓨터활용 및 문서작성 가능한 자.
 - 2) 운전 가능한 자.
- 우대사항
 - 1) 10인 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자.
 - 2) 공공기관 6개월 이상 근무자.
-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<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>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3.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
4.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

3. 근무조건

- 보 수 : 연봉 24,360천원
(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: 명절휴가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 등)
- 근로조건 : 주 5일 (월~금) 9:00~18:00
- 4대 사회보험 가입
- 채용형태 : 2023. 2. 16. ~ 2023. 5 . 15. (수습 3개월)
*3개월 수습 기간 만료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

4. 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1. 31.(화) ~ 2023. 2. 8.(수)
접수시간 9:00~18:00, 주말·공휴일 제외
- 접수방법 : 방문 및 이메일 접수
- 주 소 :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, 지하1층(상계동, KB금융노원플라자)
- 이 메 일 : nowon0419@naver.com
- 필수 제출서류
 - 지원서 1부

-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
- 자격증 사본
- 경력증명서(경력은 증명서 제출 시 인정)

5. 심사방법

- 1차 심사 : 서류전형
 -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
 - ※ 서류심사 후 합격자 개별 통보
- 2차 심사 : 2023. 02. 13. (※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 - 개별면접
 - 면접 방법 :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
 - ① 직무 파악 (20점) ② 인성 (20점) ③ 가치관 (20점)
 - ④ 역량 (20점) ⑤ 자세 및 태도 (20점)
- 최종 합격자 결정 : 2023. 02. 14. (※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 -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
 - ※ 채용예정인원 1명 (예비합격자 둘 수 있음.)

6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둘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
□ 제출된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.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□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(☎ 070-4159-48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